



산 학 협 동 약 정 서

산업체명 : 부산팀혼LUTADOR주짓수

대표자명 : 양 주 영

국제대학교와 위 산업체는 아래와 같이 산학협동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약정을 체결한다.

1.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, 취업 알선에 관한 제반사항
2.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3. 교수 및 현업종사자의 연수 또는 재교육에 관한 사항
4.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사용
5. 산업체 협동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
6. 양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사항

2024년 04월 01일

국제대학교

총 장 임 지 원



산 학 연 협 동 협 약 서

_____ 팀혼 종합격투기 부산 _____ (이하 "기관"이라 한다)와 국제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는 산학연관협력에 관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"기관"과 "대학"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간의 협력을 통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 및 수행) 당사자 간의 협력 및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, 취업 알선에 관한 제반사항
- ② 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③ 교수 및 현업종사자의 연수 또는 재교육에 관한 사항
- ④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사용
- ⑤ 산업체 협동교수 추천에 관한 사항
- ⑥ 양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

제3조(협약이행) 당사자는 협약이행에 있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처한다.

제4조(협약기간 및 변경) 당사자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5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"기관"과 "대학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6조(기타) 이 협약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2024년 3 월 11 일

기관 업체명 _____ 팀혼 종합격투기 부산 _____
 주 소 부산시 진구 백암산로54번길 9, 6층
 회 장 _____ 양 주 영 _____ (인)

대학 학교명 국 제 대 학 교
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장안윗길 56번지
 총 장 임 지 원 (인)

